##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55

발의연월일: 2022. 2. 11.

발 의 자:조해진·강대식·강민국

구자근・金炳旭・김성원

박 진 · 이만희 · 이철규

추경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의원의 총정수를 정할 때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였으나, 인구변화에만 따른 광역의원을 산정할 경우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이 감소되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은 늘어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시·도의원의 총정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인구 3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수 외에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고자 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2배수로 하고, 인구 3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①
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	
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	
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	
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	
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	
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	
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	
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u>2배수로 하고, 인구</u>
·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	3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명으로 한다. <u>다만, 인구·행</u>
<u>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u>	<u>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u>
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u>로 한다.</u>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